



금산군의회  
GEUMSAN COUNTY COUNCIL

2024. 9. 5.(목)  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-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# 의안 검토보고서

## 검토안건

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 
조례안

행정복지위원회  
전문위원 이금성

#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81호
- 제 출 자 : 최명수 의원 등 7인
- 제 출 일 : 2024. 8. 20.
- 회 부 일 : 2024. 8. 22.

## 2. 제정이유

-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동안 최초로 육전에서 승리한 전투로,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금산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치대첩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이치대첩 기념을 위한 사업 및 지원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기관 또는 단체 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6조의2, 제22조의5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의무를 명시한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거 이치대첩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금산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금산 이치대첩지는 지난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54호로 지정된 이래, 지난 7월 26일에는 「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이 충청남도 의회에서 가결 되는 등 임진왜란 육전 최초의 승전지인 이치대첩지를 기리는 명분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며, 더 나아가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념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그밖에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6조의2, 제22조의5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